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02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배준영·구자근·강대식

강선영 • 이종배 • 김형동

고동진 · 김소희 · 박준태

김종양 · 신동욱 · 이달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 제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취득 세율 1천분의 12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면서, 재산세의 경우 항공기 취득일로부터 5년간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재산세 감경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는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항공운송사업은 국방·외교·물류 등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유럽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항공기에 대해 취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내 항공사의 경우 외국에 비해 과도한 세금 납부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에서의 회복과 고유가·고환율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에 도움이 필요함.

이에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세 감면 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해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5 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본문 및 단서 중 "2024년"을 각각 "2027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과세특례)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	
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u>2024년</u> 12월 31일까	<u>2027년</u>
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	
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	
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	
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	
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u>2024년</u> 12	<u>2027년</u>

월 31일까지 경감한다.

-----.